6	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	il with	
	금융감독원	보도	2020.11.9.(월) 조간		배포	2020.11	.6.(금)	4185023
책	임 자	금 김 등	융위원회 보험과장 동 환(02-2100-2960)			김 기 훈 사무관(02-2100-2962)		
		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 해 환(02-3145-7790)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				이태기	팀 경	장(02-3145-7780)
		- 차 =	· 수 환(02-3145-7680)	담	당자	조 한 선	선팀 경	장(02-3145-7660)
		생명보험협회 기획부장 천 승 환(02-2262-6697)				권 승 주	트팀 경	장(02-2262-6617)
		손해보 방 E	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태 진(02-3702-8670)			박 승호	5 팀 경	당(02-3702-8652)

# <u>제 목 : 미성년자,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</u>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.

# 1 추진 배경

- □ **보험회사**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**소송 남용을 예방**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**사전 심의**하는 등 **내부통제 장치**\*를 운영중입니다.
  - \*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,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,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
  - 또한 **회사별 소송 현황**\*은 소비자들이 **쉽게 확인**할 수 있도록 **보험협회 홈페이지**를 통해 비교·공시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①소송 제기 건수,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
- □ 그러나, 보험회사의 **구상금 청구소송**\*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· 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**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**입니다.
  - \*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(가해자)의 행위(예: 음주, 뺑소니)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

### <구상금 청구소송 vs 기타 소송>

	구상금 청구소송	기타 소송
소송관리위원회 심의	Х	0
소송 제기 결정권자	현장 부서장	임원 이상
준법감시인 합의	임의사항	필수사항

- 한편,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\*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  - \* ①미성년자(고아) 상대 소송제기, ②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

## 1.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

- □ (현행)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\*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,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
  - \* 채무부존재 확인소송,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,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
- □ (개선) 심의대상을 ①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, ②소멸 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  - 또한,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[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(안)]

- ① **(취약계층 상대) 소송무능력자**(미성년자, 한정·금치산자) 및 **경제적 취약** 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
  - **경제적 취약계층**의 **기준**(예 : 기초생활수급권자)은 업계 **공동기준** 마련
  - **소제기 전**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, 소송 **진행중 확인**되면 소송 **지속 여부 심의**
- ② (소멸시효 경과) 모든 소비자 상대(취약계층 여부 불문) 구상금 청구소송



# 2.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·공시 확대

- □ (현행)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①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,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・ 공시하고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비교·공시 범위를 ③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, 심의결과(승인·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)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# 3.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

- □ (현행)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,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.
- □ (개선)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, (i)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, 시효연장 소송 금지, (ii)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# [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(예시)]

- ① (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) 미성년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<u>실질적으로</u> <u>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</u>에 대해 채무감면
- ② (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제외)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
- ③ (시효완성 구상채권 채무면제)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<u>시효</u> 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<u>면제사실 통지·공개 내규화</u> 유도

#### 3 추진 계획

- □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➡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혐의·추진하겠습니다.
- ② 소송현황 비교·공시 확대 ➡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,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'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####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